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26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한정애 · 김재원 · 조인철
김 윤 · 서영석 · 이학영
박용갑 · 김영배 · 허 영
김준환 · 강준현 · 박상혁
이수진 · 박홍배 · 이기현
이강일 · 최기상 · 김원이
김주영 · 윤후덕 · 정준호
김한규 의원(22인)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투자정보로서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 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E 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자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 3년동안 행

정, 민사 및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과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추정정보, 예측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작성토록 함(안 제159조제8항 신설).
- 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시기준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1조의3 신설).
- 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에 대해서는 예측정보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기재된 경우 고의가 아닌 한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 및 행정책임을 면제함(안 제162조 및 제164조제2항제2호).
- 마.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69조의2 신설).

- 바. 선의의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70조).
- 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369조의2 신설).
- 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4 신설).
- 자.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인증하는 행위,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업무를 인증과 동시에 제공하는 행위 등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안 제369조의5 신설).
- 차.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해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검사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69조의6부터 제369조의8까지 및 별표13의2 신설).
- 카.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29조의4 신설).
- 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작성된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책함(안 제444조제13호라목).

파.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중요사항에 대해 인증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44조제19호의2, 제445조제41호의2 및 제41호의3 신설).

하. 지속가능성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인증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의무화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거. 지속가능성 공시 초기 3년에 대해서는 행정, 민사 및 형사책임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고의에 의한 경우 행정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사는”을 “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 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4호의2,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으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사보고서는”을 “감사보고서 및 제369조의3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측정보”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예측정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측정보”를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측정보”를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측 또는 전망”을 “예측·전망 또는 추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하여 예측치와”를 “대하여”로 한다.

제16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5조제3항 중 “회계감사인과 감사”를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 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6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또는 지속가능

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0조의 제목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회계감사인등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또는 제36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로, “회계감사인의”를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로 한다.

제6편에 제7장의2(제369조의2부터 제369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① 제169조의2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또는 투자자 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그 밖에 업무방법, 책임보험 가입 등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 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기한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신뢰성 및 인증의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69조의5(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등의 금지행위) ① 지속가능성 인증 기관 및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주식보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인증 업무를 수행중인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종속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증 대상 사업연도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9조의6(업무보고서 및 공시등)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그 인증기관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투입 인력 및 시간, 임원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임원의 징계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7(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의8(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제369조의2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1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4(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

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9조의3제1항제2호”를 “제42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29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을 “제429조의2, 제429조의3 및 제429조의4”로 한다.

제444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5까지를 각각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는 제외한다)

19의2. 제16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41의2. 제3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6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한 자

4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9조의2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을 한 자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2030년 1월 1일
2. 제369조의2 및 제369조의4: 2028년 7월 1일
3. 제369조의5, 제369조의7 및 제369조의8: 2029년 1월 1일

제2조(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속가능성 공시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제162조, 제164조, 제429조 및 제4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제162조, 제164조 및 제429조를 적용한다.

[별표 13의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69조의8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제16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제16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필요한 조치에 불응한 경우
3. 제3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36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9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해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369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법인에 대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다른 업무를 제공한 경우
7. 제36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8. 제36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1. 제36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36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u>이사</u> 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u>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u>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

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
한다)는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 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
----- 감사 보고서 및 제369조의3제2항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는 -----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예측정보-----.

---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생략)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 ~ ⑤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

1. ----- 추정정보
보등 또는 예측정보-----

2. 예측·전망 또는 추정-----

3. (현행과 같음)

4. ----- 대하여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
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
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
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
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
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
이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
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
는 지속가능성 인증-----

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 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

④ -----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

제169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6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0조(회계감사인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

----- 감사보고서 또는 제36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장의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① 제169조의2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지속가능성 인
증 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한다.

1.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
을 갖출 것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지속
가능성 공시대상법인 또는 투
자자 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5. 그 밖에 업무방법, 책임보험
가입 등 지속가능성 인증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등록

<신 설>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기한 및 절차 등 그 밖

<신 설>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신뢰성 및 인증의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69조의5(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등의 금지행위)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주식보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신 설>

이해관계가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해 인증업
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인증 업무를 수행중인 지속
가능성 공시대상법인(종속회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 인증 대상 사업연도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
간 중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
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업무의 독립성
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9조의6(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업무보고서를 증권선물위
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그
인증기관의 상호, 사업내용, 재
무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투입
인력 및 시간, 임원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
정한다), 임원의 징계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및 제2
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
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7(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
한다)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의8(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369조의2제1항에 따
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
록한 경우

2. 제369조의2제6항에 따른 등
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1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
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 설>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제1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9조의4(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
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u>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u>제429조의3제1항제2호</u>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u>제429조의2</u> 및 <u>제429조의3</u>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 -- <u>제429조의3제1항제2호</u> 및 <u>제429조의4</u>----- ----- ----- ----- ----- --. ② ----- ----<u>제429조의2</u>, <u>제429조의3</u> 및 <u>제429조의4</u>----- ----- -----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u>	<u>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는 제외한다)</u>
마. ~ 사. (생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14. ~ 19. (생략)	14. ~ 1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9의2. 제169조의2제1항에 따라</u> <u>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u> <u>자</u>
<u>19의2. ~ 19의5. (생략)</u>	<u>19의3. ~ 19의6. (현행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5까지와 같음)</u>
20. ~ 29. (생략)	20.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5조(벌칙) -----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2의2. 제1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지</u>

